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18 선고 2022나9469(본소), 2022나9476(반소), 2022나9483 판결
[공사대금 · 계약위반에 따른 배상금 청구의 소 · (참가) 계약위반에 따른 배상금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18 선고 2022나9469(본소), 2022나9476(반소), 2022나948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25 선고 2021가단5049853 판결

전 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A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F)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B

독립당사자, 항소인 C

변론종결 2023. 3. 21.

판결선고 2023. 4. 18.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25. 선고 2021가단5049853(본소),
2021가단25647(반소), 2021가단5253089(참가) 판결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본소 및 반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독립당사자참가로 인한 부분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독립당사자참가

피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에게 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신청서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나. 참가인

제1심판결의 참가인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참가인에게 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쪽 제4행의 “G”를 “H”로, 같은 쪽 제5행의 “신축공사”를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로, 같은 쪽 제7행의 “도급계약”)을 “도급계약(이라 한다)로, ”같은 쪽 제12행의 “추가공사비”를 “합의금”으로, 같은 쪽 제15행의 “피고”를 “원고”로, 같은 쪽 제22행의 “나머지 2,000만 원”을 “나머지 2,500만 원”으로, 제4쪽 제13행의 “갑 제1, 2호증, 을 제2, 3, 5, 6호증”을 “갑 제1, 2, 16, 17호증, 을 제2, 3, 5, 6, 12호증”으로, 제7쪽 제3행의 “지체한데”를 “지체한 데”로, 같은 쪽 제5행의 “손해배상의 예정이”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로 각 고치고, 제6쪽 제4 내지 11행을 아래 【】와 같이 바꾸어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5 내지 11, 18, 2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①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거나, ② 피고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원고가 정화조 공사와 2차 골조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였고 원고가 한 공사 부분의 기성고에 따라 지급받을 공사대금이 피고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초과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는 이유 없다[한편 앞서 본 각 증거 및 갑 제18, 21, 27호증, 을 제1, 4, 10, 11, 13호증, 을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대표이사는 이 사건 도급계약 및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완료했어야 할 시점 이후인 2020. 5. 11.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다가구주택 I동의 3층 벽 및 댐방 보수공사, 다가구주택 J동 옥상 3층 계단, 벽 댐방공사'가 잔여공사로 남아 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사실, 피고는 2020. 5. 12. 원고의 대표이사에게 '최초 설계도서 정화조', 'I동 정화조 설계도서', 'J동 정화조 설계도서', '정화조 I동

크기(14톤)', '정화조 J동 크기(5톤)'이라는 이름의 파일들을 첨부하면서 '공사 마무리(정화조 포함)를 잘 부탁드립니다. 마무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140만 원 정도로 생각하시니 K대표님이 깔끔하게 처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공사의 경우 확인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최초 도급계약서의 특약사항 제2조와 첨부된 설계도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D(I동)의 경우 14톤이며 L(J동)의 경우 5톤입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사실, 피고는 2020. 5. 13.에도 원고의 대표이사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이 사건 공사를 마무리할 것을 재차 요구하였고, 2020. 5. 14.에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20. 3. 19.까지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어야 함에도 2020. 5. 14.까지 일부 바라시와 정리정돈, 콘크리트 타설, 정화조 공사 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보서를 내용증명 우편물로 발송하여 그 무렵 위 통보서가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20. 5. 24., 2020. 6. 23., 2020. 7. 24. 3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데에 원고의 귀책사유가 없고 정화조는 면적 증감에 따라 용량이 증감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도급계약서상의 정화조 공사는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물을 발송한 사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설계도면상 위 다가구주택 I동의 정화조 용량은 14톤, J동의 정화조 용량은 5톤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반면 피고가 이 사건 공사의 설계를 변경함으로써 필요한 정화조 공사의 규모가 기존의 규모와 달라졌다거나 당초 약정한 정화조 공사가 불가능해졌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본소와 반소에 대한 항소 및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상아, 판사 송영환, 판사 김동현